

2024년도 새롭게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된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급부금(10만 엔·아동 가산)에 관한 공지사항

물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참작하여, 특히 가계에 대한 영향이 큰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10만 엔을 지급하는 동시에 해당 세대 중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에는 아동 1인당 5만 엔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공지사항은 송부 시점에서 지급 후보 세대(심사 결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및 동봉 서류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뒷면 오른쪽 서약·동의 사항을 충족하는 세대는 상기 기한까지 수급 수속을 해 주십시오. 또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뒷면의 기재사항에 서약 및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 대상	10만 엔	2024년 6월 3일 시점에 나고야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2024년도분 주민세 소득할 세대원 전원이 비과세이며 그 중 적어도 한 명이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인 세대 〔 단, 다음의 경우는 지급 대상 외 〕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7만 엔) 및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 대한 급부(10만 엔) 대상 세대 ·주민세 과세자의 세법상 부양친족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
	아동 가산	10만 엔 지급 대상 세대 중 18세 이하 아동(2006년 4월 2일생 이후)이 있는 세대 ※ 아동 가산에 대해서는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세대주 ※계좌 입금은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이 소요됩니다.	
지급금액	1번에 한함 1세대당 10만 엔+아동 1인당 5만엔	
수급 수속	1. 본지의 오른쪽 신청서 ①~④를 기재하십시오. 2. 이 용지와 신청서를 <절단선>으로 잘라주십시오. 3. 신청서 뒷면에 입금 계좌 정보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4. 신청서를 반신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대리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별도 제출 서류가 필요한 분은 필요 서류도 잊지 마시고 동봉해 주십시오.)	

<서약·동의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새롭게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된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급부금(10만 엔 · 아동 가산)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약 · 동의합니다.

- (1) 2024년도 새롭게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된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급부금(10만 엔 · 아동 가산)(이하 “급부금”이라 한다.)의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 (2) 세대원 중에 주민세(소득할)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자는 없습니다.
- (3) 주민세가 과세되어있는 자의 세법상 부양친족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닙니다.
- (4)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7만 엔) 또는 2023년도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 대한 급부(10만 엔)의 급부 대상이 된 세대와 동일한 세대 및 해당 세대의 세대주였던 자를 포함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 (5) 세대원 중에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를 받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 (6) 급부금 지급 요건의 해당성 등을 심사하는 등의 목적으로, 나고야시가 필요한 주민기본대장 정보, 세금 정보 등 공부(公簿) 등의 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을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구·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7) 공부(公簿)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 (8) 나고야시가 지급을 결정한 후 신청서에 미비점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계좌 입금 등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나고야시가 수급자에게 2024년 10월 31일까지 연락 ·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본 신청서 제출을 취하한 것으로 나고야시가 간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 급부금 지급 후 본 신청서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급부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급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 (10)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나고야시가 엄중히 관리하고, 나고야시의 지급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당해 정보를 5년간 보존하는 데 동의합니다.
- (11) 지금까지 다른 시정촌에서 같은 종류의 급부금을 받은 바 없습니다.

✍ 신청서 ①~④를 검정펜으로 기재하십시오.
지워지는 볼펜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令和6年度新たに住民税均等割のみ課税となった世帯向け 緊急支援給付金 (10万円・子ども加算) 申請書

(宛先) 名古屋市長
以下のとおり申請します。

1 記入日 9 月 7 日

1 支給対象世帯 ※①~④を記入してください(裏面あり)

No.	対象世帯員氏名	生年月日
1	名古屋 太郎	平成〇年〇月〇日
2		
3		
4		
5		
6		

3 主(受給者)の氏名	2 署名(世帯主の氏名)	4 連絡先電話番号★忘れずに記入してください。 平日9:00~17:00に連絡の取れる番号(できれば携帯電話番号)
名古屋 太郎	名古屋 太郎	090 (1111) 1111

2 振込先口座名義の確認

(1) 世帯主・世帯員口座の場合 (2) それ以外の口座の場合(代理受給を行う場合)
下記の者を代理人と認め、本給付金の手続・受給を委任します。

代理人氏名	代理人連絡先	世帯主との関係
		1. 親族 2. 法定代理人 3. その他

※裏面の必要書類を添付 [3]はコールセンターへ連絡

3 へお進みください

3 振込先口座情報

(1) 金融機関(ゆうちょ銀行を除く)

金融機関名	支店名	分類	口座番号	口座名義(カナ)
はちまる銀行	なごや支店	普通 2. 当座	11111111	ナコヤ タロウ

(2) ゆうちょ銀行

ゆうちょ銀行	(通帳) 記号	(通帳) 番号	口座名義(カナ)
通帳・キャッシュカードの[記号・番号]を記入	121710	12345671	ナコヤ タロウ

記入された口座情報(通帳等)の写しを裏面に貼付してください

事務局使用欄(記入不要)

1 제출 시의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2 지급 대상 세대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십시오.

3 인쇄되어 있는 수급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지급을 받지 않으실 경우 서명란에 “辞退”(수급 받지 않겠음)라고 써넣고 반송해 주십시오.
신청서 기재 내용에 미비점 등이 있을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전화 드릴 수 있으므로 평일 9:00~17:00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되도록이면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휴대전화 경우 쇼트 메시지를 송신할 경우도 있습니다.

4 대리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리인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리인의 평일 9:00~17:00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대리 수급이 가능한 분】

- 친족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보좌인·보조인)
 - 상기 이외(본인과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신원보증 단체 등))
- ※대리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보험증, 운전면허증 등)과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3.상기 이외]에 해당하는 분은 콜 센터(☎050-3135-3260)에 연락해 주십시오.

5 •입금 계좌는 “1수급 대상 세대”의 “대상 세대원 성명” 또는 “2입금처 계좌명의 확인”에서 대리인으로서 인정한 분의 계좌를 기재해 주십시오.
•계좌명의인, 금융기관명, 지점명, 분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또는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이미지 등을 신청서 화면에 첨부해 주십시오.

(1) 금융기관(유초은행을 제외)

은행(유초은행을 제외) 또는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실 경우

계좌 명의인: 나고야 타로우
금융기관명·지점명: 나고야지점 (0121-45-6789)
분류·계좌번호: 11111111

(2) 유초은행

유초은행의 계좌를 지정하실 경우

계좌 명의인: 나고야 타로우
기호·번호: 12110 12345671

이제부터